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
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이 동 우 의원 등 8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1일

3. 제안이유

도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이 확산됨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지원, 사업추진에 따른 협력 등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, 안 제5조)

다. 계획의 수립·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라. 사업의 지원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, 안 제8조)

마. 지도·감독 및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, 안 제11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○ 환경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생물을 고시함으로써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고 있음.

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교란 어종을 퇴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.

그러나, 생태계교란종이 단순히 어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 및 식물 등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교란 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.

따라서,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함으로써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자연상태계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○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,

- 충청북도의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
- 「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 수립,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활동 및 수거·처리, 재활용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생태계의 보전, 복원 및 자연환경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, 안 제5조는 사업추진에 따른 협력 등에 대한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.
- 안 제6조는 5년 단위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대책의 수립·추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는 도민과 기업·단체 및 기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

활동, 퇴치 행사 및 대회 등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10조는 사업비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22. 9. 2. ~ '22. 9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○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, 기타 “**특이한 사항**”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6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도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이 확산됨에 따라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과 복원, 자연환경 회복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등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